(엠바고) 2017.11.2일 15:30

※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(11,2일)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

2017. 11. 2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. 추진배경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Ⅱ. 추진방향5
Ⅲ. 세부 추진과제6
1.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6
2.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16
3. 창업·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······· 21
Ⅳ. 추진계획 26

Ⅰ. 추진배경 : 우리 혁신창업 생태계 현주소

□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의 역동성 저하

- '00년 초반 벤처 붐 등 역동적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가 IMF 극복 및 성장에 기여하였으나, 이후 전반적 활력이 저하
- * 주요 도시별 창업 생태계 가치(Startup Genome, '17년, 세계 55개 도시, 10억불): (실리콘밸리) 264, (베이징) 131, (텔아비브) 22, (싱가폴) 11, (서울) 2.4
- o 창업생태계의 활력 저하, 창업기업의 중견·대기업으로의 성장 등 역동성 저하로 전통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고착화
 - 세계 215개 유니콘기업 중 국내 벤처기업은 2개, 창업을 통한 자수성가형 부자 비중*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
 - * 창업형 자수성가형 부자 비중(피터슨연구소, %) : (美) 32.1, (日) 63.0, (韓) 18.5

② 창업 양적 확대, 질적 측면에서의 혁신성은 미흡

- o 신설법인 수, 벤처기업 수 등 양적 지표들은 지속 상승 추세
- 질적인 측면에서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은 미흡
 - 국내 창업은 생계형이 다수를 차지하고,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은 유럽 · 미국 ·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
 -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석박사급 등 고학력 우수인력의 창업 부족
 - * 창업자 중 석 박사 비중(14년, 창업 7년내 기업 198만개 기준)은 5.3%에 불과

< 연도별 신설법인 · 벤처기업 수 >



* 자료 : 통계청 * 자료 : OECD(*14년)

<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 >



③ 주요국에 비해 벤처투자 부족 등 모험자본 역할 미흡

-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벤처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, 경제규모 등에 비해서는 부족한 상황
- *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('15년, %): (美) 0.33, (中) 0.24('14년 0.11), (韓) 0.13
- ㅇ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기업당 베처투자 규모가 크지 않아 투자보다 대출형태의 자금조달에 많이 의존
- 특히, 제품개발 이후 양산·사업화 등 성장단계(Series B·C) 에서 필요한 자금조달 규모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
- 벤처투자와 정책금융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혁신성·성장성 높은 기업들에 효율적 자금공급 기능 저하

구 분	창업초기단계		구 분 창업초기단계		성장	단계
 하 국	엔젤/AC	초기VC	일반VC	PE		
안 폭	1억원 미만	5억원 미만	10~20억원	50억원 내외		
 외 국	Seeding	Series A	Series B	Series C		
<u> 커 푹</u>	5억원	50억원	150억원	320억원		

- o 베처투자의 **모험자본 성격도** 상대적으로 **부족**한 것으로 평가
- 국내 베처캐피털의 보통주 투자 비중은 약 20%에 불과하고, **상환우선주 · 회사채 투자**가 높은 비중을 차지
- 엔젤투자^{*}, 크라우드펀딩^{**} 등 초기 창업기업 대상의 新유형 자금조달 수단도 아직까지 초기단계
- * 엔젤투자 비중(벤처투자+엔젤투자 대비, '15년, %): (美) 28.8, (英) 29.1, (韓) 6.3
- ** 크라우드펀딩 '16.1월부터 자금조달 허용, 월평균 발행건수가 12건에 불과

< 연도별 신규 벤처투자 >

< 베처캐피탈 투자유형별 비중 >



* 자료 : 벤처캐피탈협회

1,500

④ '투자→회수', '실패→재도전'의 선순환 고리가 취약

- 코스닥·M&A 등 **희수시장 비활성화**로 인해 벤처투자 등 **모험자본 공급이 제약**
 - ① M&A 등에 대한 기존 대기업·투자자의 인식·참여부족, 제도적 기반 미흡 등으로 관련 시장조성이 여전히 부진*
 - * 벤처투자 회수비중(16년, %): (美) M&A 94 vs. IPO 6, (韓) M&A 11 vs. IPO 89
 - ② 코스닥시장의 2부 리그화 등 시장기능이 약화
 - i) 창업 후 코스닥 상장·희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*되고, 코스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도 감소**
 - * 창업 후 코스닥시장 IPO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데 평균 11.4년 소요(16년)
 ** 코스닥시장 자금조달 규모(조원 IPO+유상증자): ('99) 4.5 → ('00) 7.1 → ('16) 3.7
 - ii) 코넥스·K-OTC 등 시장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 큰 상황

구 분		'14년	'15년	'16년	'17년
코넥스	일평균 거래량(억원)	3.9	18.2	24.7	13.1
	신규상장(개)	34	49	50	20
K-OTC	일평균 거래량(억원)	9	9	6.4	6.8
	신규등록(개)	74	30	16	3

- "창업실패 = 재기불능" 공식이 아직까지 유효, 재도전을 위한 제도적·정책적 지위 강화 필요
 -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 지속 등 **사업실패**에 대한 창업자 부담이 여전히 **높은 수준**
 - * 폐업기업 대표자 부담(중기부, '17년) : 3.56억원(보증 대위변제 3.09 + 조세체납 0.37 등)
 - 정부 정책지원도 **창업단계에 집중되고 재도전 지원**은 미미
 - * '17년 창업·재도전 정책지원 금액(억원) : (창업단계) 5,945 <u>(재도전단계) 213</u>
 - ** 2년 생존율 비교(%) : 창업기업 47.5(14년) vs. 정부지원 재도전기업 83.9(16년)

5 점진적인 벤처 활성화 대책으로 붐 조성·확산에는 미흡

- 혁신창업·벤처활성화를 위해 그간 **다양한 정책지원** 추진
- 부처별·분야별로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을 마련·시행
- * '17년 계획기준 7개 부처가 6,158억원 규모의 창업지원 정책 수립·시행중 (중기부 5,191억원, 과기정통부 612억원, 특허청 111억원, 교육부 16억원 등)
- 모태펀드 출자,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 공급 확대
- * 모태펀드 정부출자 추이(억원) : (11) 925 ('13) 1,425 ('15) 3,961 ('16) 2,130
- **창조경제혁신센터 · 판교창조경제밸리** 조성 등을 통해 혁신 창업 인프라 확충 추진
- 벤처투자액 증가, 벤처기업 급증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, 점진적·분절적 정책으로 민간중심의 벤처 붐 조성에는 한계
- 그간의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**획기적 제도·인센티브 개선** 보다는 **점진적인 개편** 위주
- 각종 진입·행위규제 완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他 정책 수단 활용에는 다소 소홀
- * (예시) 창업투자회사 설립시 과도한 자본금 및 전문인력 요건 요구, 유사한 벤처투자제도가 서로 다른 법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음
- 중국 등은 "大衆創業・萬人革新" 기치 아래 혁신창업^{*}을 전폭 지원하고, 정부+민가 협력을 통해 창업기반 조성^{**} 노력
- * 북경 중관촌・항주 몽상소진 등 창업기반 확충, 창업기업 각종 세금 대폭 면제 등
- ** 佛 통신기업 창업자 Niel이 3,300억원을 투자,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 설치, 정부도 해외 우수인력 유치, 3,000억원 규모의 지원기금 조성 등에 전력
- ⇒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,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"혁신창업 국가" 실현

Ⅱ. 추진방향

◇ 목표 :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,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"혁신창업 국가" 실현

◇ 3대 추진방향

- ① 우수인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창업에 도전해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
- ② 혁신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고, 투자의 성장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베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
- ③ 「창업 → 실패 → 재도전」, 「투자 → 회수 → 재투자」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**창업·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**



Ⅲ. 세부 추진과제

1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

◇ 기업·대학·출연硏 우수인재들의 質 높은 창업을 유도하고,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"제2의 벤처창업 붐" 조성

①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경 조성

□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내벤처 · 분사창업기업 활성화

- 사내벤처·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·운영
- (창업준비)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'예비벤처'에 포함하고, 연구개발 등 소요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
- *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
- (창업실행)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,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*하여 사업화 자금(준비금)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
- * 민·관 공동 재원(18년 200억원) 활용,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
- (창업이후) TIPS*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&D·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,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**
- * <u>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-up</u>;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 ** 최장 지원기간 확대(2년→3년) 및 지원한도 상향(10억원→20억원)
- 분사창업 실패시 재입사가 가능한 **창업휴직제 도입을 유도** (모기업-정부간 협약)하고, 분사창업기업에도 **세제혜택*** 제공
- * 사내벤처 분사시 창업 인정 \rightarrow 소득세·법인세 5년간 50% 감면(17년 세법개정안 반영)
- **모기업**의 적극적인 사내벤처·분사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**인센티브** 확대

- 대기업 등이 **상생협력기금 출연**으로 분사창업기업을 지원할 경우 **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***에서 차감('17년 세법개정안 반영)
- 분사창업 지원 대기업의 **동반성장지수 우대** 확대(1점→2점)
- 분사창업 以前단계에서 공정위가 사전에 신속 상담을 실시 하여 대기업집단 편입^{*}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
- * 모기업이 분사기업의 지분 30%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거나, 모기업이 분사기업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인정되면 편입
- 「**(현장목소리)** "대기업에게 벤처투자는 高리스크이기 때문에 경영진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꼭 필요합니다." (○○ △그룹 상무)
 "대기업 분사기업도 정부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." (○○ 중견벤처기업 대표)

□ 대학·출연硏 인센티브 체계의 창업친화적 개편

- 교수·연구원 등 우수인력의 창업 장려를 위해 **창업실적을** 교원 재임용 평가에 반영, 휴·겸직 가능기간·조건 완화^{*} 유도
- * 창업친화적 교원인사제도 매뉴얼을 제정하여 대학 등에 보급·확산

구 분		현 행	주요 개선(案)	
대학	교원 평가	일부 대학만 반영	교원업적 재임용 평가 반영	
- 네띡	휴 · 겸직	기관자율 도입	휴·겸직 인정기간 확대	
	정원반영	창업휴직시 비별도 정원	별도정원 인정	
출연硏	창업준비비용	창업준비비용 지원규정 미비	기술료 수입을 창업지원금으로 활용 인정	
공공기관	창업인사규정	창업 인사규정 미비 (공공기관 3%만 시행)	창업 인사규정 제정 유도	

- 창업실적 등의 **지표**를 **대학**(LINC[†]) · **출연硏**(산업기술형) · **공공 기관 평가에 확대반영^{*}**하여 창업을 권장하는 조직분위기 조성
- * (재정지원 평가) LINC⁺(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) 정성지표 중 창업부문 비중 확대 (예시 : 3%→5%)

(출연研 평가) 창업지원규정 신설·개선시 출연연 평가에 반영 (공공기관 평가)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부여 추진(평가지침 개정 완료)

- 대학창업 지원사업의 **효과성 제고**를 위해 부처별로 운영하던 **개별사업 수행조직**^{*}을 '**차업지원다**'으로 일원화
- * 창업선도대학(중기부), 과기형 창업선도대학(과기정통부),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(교육부)
- 대학·출연연의 사업화·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대학이 공동 조성하는 대학창업편드^{*} 규모 확대
- * 정부와 대학이 매칭하여 조성하는 창업투자 프로그램('17년 120억원 → '18년 150억원)
- 청소년·대학생들의 도전정신 고취를 위해 **기업가정신 교육을** 중고교 정규교과^{*}에 포함하고, 창업선도대학 교육과정에 도입
- * 시행일정 : ('18.3月) 중1·고1 → ('19.3月) 중2·고2 → ('20.3月) 중3·고3

□ 팀창업 재창업 시회적기업 창업 등 다양한 창업유형 활성화

- 다른 분야·배경 출신 인재들의 융합형 팀창업 촉진을 위해 기술창업 정책지원 대상에 우선 선정하고, 자금지원시 우대
- TIPS·창업선도대학·창업도약패키지 등 기술창업 지원정책 전반으로 확대 적용
- '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*' 확대 운영**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첫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유형 활성화
- *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, 사업화 비용(최대 1억원) 및 보육 지원
- **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(억원) : ('17년) 127(신설) → ('18년) 148
- 동일분야 재창업자도 창업지원법령상 **신규 창업자**와 동일수준 으로 **정책지원**(7년 이내 한정)
- * (현행) 폐업 후 동일분야 재창업시 창업범위 대상에서 배제
- 소셜벤처 등 **사회적가치** 기반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모대 펀드內 **임팩트**(Impact) **투자펀드를 1,000억원** 규모로 신설

②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기능 강화

□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

- **벤처기업 확인권한을 민간**으로 이양하여 **혁신성·성장성** 높은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집중 지원받도록 **선별기능 강화**
- * 선배벤처・벤처캐피털 등 전문가로 민간위원회를 구성
- 대출·보증실적^{*}에만 근거한 官 중심의 벤처확인 유형 폐지, 벤처투자·연구개발 유형 확대, 신기술 성장 유형 신설
- * (현행) 기보·중진공에서 대출·보증실적이 있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 가능
 → <u>대출·보증유형 90.4%</u>, 벤처투자 3.6%, 연구개발 5.7%(17.7월末)
- 서류작성 등 벤처기업 확인기간 연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**취행 2년**에서 **3년**으로 확대
- ☞ (현장목소리) "'06년에 벤처확인 제도를 바꾸면서, 혁신성·성장성 있는 기업보다 일반 중소기업들이 대거 벤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 제대로 된 벤처기업을 키우려면 벤처확인 제도부터 재설계해야 됩니다." (○○ 선배벤처인)

□ TIPS 방식의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

- 민간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**TIPS 방식**을 지원 제도 **전반**으로 **확산**하여 창업·벤처정책의 효과성 제고
 - 사내벤처 지원제도, 창업선도대학, 창업도약패키지, 재도전 프로그램 등에 '18년부터 우선 적용
 - 기존 **창업·벤처정책**을 zero-base에서 **전수 검토**하여 구체적 전환시기를 제시하는 '중**장기 전환 로드맵**' 마련(~'18.上)
- **코스닥 상장기업** 등이 창업기업의 **투자자·액셀러레이터**로 참여할 수 있도록 **TIPS** 운영과정에서 기업참여 확대방안 검토

□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혁신기업 여신공급 확대

- 기술금융 공급확대를 위해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결합된 통합
 여신모형*의 개발·적용 유도(*17년 시범적용 → '20년 본격적용)
- * (현행) 현재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분리되어 있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도 신용평가 등급이 낮으면 은행 대출에 어려움
- **동산담보물의 평가·관리·매각** 인프라를 구축하여 은행의 동산담보의 관리비용 절감 및 원활한 관리·처분 환경 조성
- * (평가) 은행수요에 맞는 심화된 평가정보 제공 (관리) ICT를 활용한 자산관리 효율화 (매각) 실행요건 및 절차 명확화, 캠코·기계거래소 등을 통해 매각 활성화
- 기술력 높은 기업이 투·융자를 연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기보에 5,000억원 투자연계보증제도 도입
- 벤처캐피탈협회·모태펀드와 협력*하여 대상기업을 선정· 지원하고, 보증요건·요율·범위 등을 우대***
- *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벤처캐피탈협회 3자간 업무협약 체결
- ** 벤처투자금액 50% 이내 보증심사 면제, 0.5%p 보증료 감면, 창업 7년내 전액보증

③ **창업 걸림돌 · 애로 · 부담 해소** (부담금 · 조세 · 입지)

□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세금부담 경감

-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(~22년)하고, 면제 부담금 종류·대상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^{*}
- * (1단계 :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) 現 12종 → 15종으로 확대 (2단계 : 업종확대) 現 창업 5년내 제조업 →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
- 초기 **창업기업**에 대한 재산세 등 부담을 경감하고,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취득세 중과 면제(17년 세법개정안 등 반영)

구 분	세 목	현 행	개 선
창업기업	재산세	창업 5년內 50% 감면	창업 3년內 : 100% 감면 창업 4~5년 : 50% 감면
	소득세 법인세	창업 5년內 50% 감면	고용증가율에 따라 추가감면 (최대 50%), 신성장서비스업 초기 3년 75%
기술혁신기업 (이노비즈)	취득세	수도권內 중과(3배)	중과 면제(일반과세)

□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

- 창의적 **아이디어**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**실제**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
 - 학생·직장인·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('22년 350개), 전문랩('22년 17개)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
- 다양한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, 학교·지역동아리,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
- 아이디어가 **사업화·창업**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
 -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**시제품 제작·양산을 지원**하고,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**자금조달*** 연계 지원
 - *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(신보)
 -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**멘토링, 입주** 공간 제공 등 지원

※ 11.2일「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 방안」별도 발표

□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

- **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**로 역할을 재정립 하여 취약한 **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** 강화
-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(incubator)과 투자(investor)를 병행하는 액셀러레이터 기능 강화
-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**他지역 창업기업 지원**에 **연계활용***하고, 전통시장 활성화·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
- * (예시)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
-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·지역기업·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·자율적 참여 유도

구 분	현 행	개 선
의사결정	하향식(top-down)	상향식(bottom-up)
지원체계	대기업 경직적 매칭 (일방지원)	중견·벤처, 대학 등 자율참여 (상생협력)
지자체 참여	자율적 참여 부족	적극적 참여·협력
센터 기능	창업, 중기지원, 특화산업 지원 등 일률부여	초기창업 + 투자기능 집중, 센터별 특화

□ 판교밸리 조성과 국유재산·공공기관을 활용한 혁신창업 공간 확충

- 현재 진행중인 **판교창조경제밸리**^{*}를 초기 창업기업과 창업지원 기관이 밀집한 국내 최고수준의 **혁신모델로 선도개발**
- * 43만m² 규모, 창업초기·벤처기업 1,000여개 및 공공창업지원센터 11개 입주 기대
- 판교밸리의 조성·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지방 도시첨단산업 단지(11개)를 대상으로 판교모델 확산 추진계획 수립
- ※ 11월중「(가칭)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」마련・발표
- **국유재산**의 적극적 개발·활용을 통해 창업기반 확충 지원
- 도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시 일정부분을 벤처집적시설· 창업보육센터 등으로 할당

- 창업·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**국유건물 대부료를 감면**하고,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**국유지식재산 사용료 면제** 추진
- **혁신도시 공공기관**에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혁신기업 **창업** 공간을 제공하고, 입주기업에 기술・설비·자금 등 지원
 - 입주기업 보유기술 구입을 통해 공공기관 업무혁신*에 활용
 - * (수자원공사) '18년부터 공사 시설(댐, 정수장 등)을 민간에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, 개발된 기술을 구입 또는 해외수출 등 판로지원 실시
- 원도심의 역사·문화 자산을 활용하면서 도심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(46개) 추진시 창업집적공간 조성
- * (예시) 서울시 종로세운상가 도시재생 → 17개 청년창업팀 입주 등 창업공간 조성

□ 법률·세무·노무·지적재산권 애로지원을 위한 Support Hub 구축

- **혁신센터·TIPS** 타운 등을 중심으로 노무·세무·법률 등 **창업자**의 경영상 실무 애로지워 창구를 확충
 -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체화와 **지식재산권화**를 지원하고,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고품질 지식재산권 컨설팅 제공
 - * '18년 지원목표(건) : (예비창업자) 930, (창업기업) 420

④ 죽음의 계곡(death valley) 극복과 성장 지원 강화

◇ 죽음의 계곡과 J-Curve 효과

- 초기기업은 창업 이후 3~5년에 **사업실패율 급증**('죽음의 계곡')
- * 창업 후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양산·사업화 단계에서 자금·판로부족에 직면
- ** 창업 5년 후 생존율('14년) : (獨) 41.0, (英) 37.5, (韓) 27.3
- ② 죽음의 계곡 극복 후 본격성장 단계에서 일자리창출 등 (+) 효과 극대화('J-curve')
- * 전체 1%에 불과한 scale-up 기업이 고용·경제성장의 68%, 36% 기여(英)
- ❸ 그간의 정부 정책지원은 대부분 초기 창업단계에 집중
- * 창업단계별 예산비중(17년) : 창업준비 5%, 창업초기 62%, 창업도약 30%

□ 창업기업 성장단계 도약을 위한 패키지 지원 확대

- 창업 3~7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**창업도약패키지*** 사업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**1,000억원으로 조기 확대**
- * 사업모델 혁신, 아이템 검증·보강·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진출, R&D 등을 최대 2년간 1억원 지원
-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**기업당 지원금액을 2배 확대***하고, 혁신성·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 집중지원**
- * 지원기간 및 금액: (현행) 최대 2년, 1억원 → (개선) 최대 2년, 2억원
- ** 고부가기술 분야 지원비중(%): ('17년) 15 → ('18년) 50 → ('20년) 70

□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혁신형 조달제도 도입

- 초기 창업기업의 조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**소규모계약** (2.1억원 미만)에 대해서는 **실적제한제*** **폐지** 및 **적격심사제** 전환
- * (현행) 일정금액 이상의 조달실적이 있는 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소규모 계약에도 적용
-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**혁신적인 제품·서비스 개발·구매**를 촉진하기 위해 **경쟁적 대화방식*** 도입
- * 발주기관이 입찰자의 기술개발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해 제품혁신 등에 기여하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, EU·英 등에서 운용중

※ 11월중「혁신성장・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」별도 발표

□ 민간 유통채널 등의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기업 판로확보 지원

- **정부 판로지원** 사업체계를 **온·오프라인 민간 유통채널** 중심 으로 전환하여 사업효과성 제고
- * '18년중 판로지원 사업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→ 성과평가 후 전면도입

※ 민간유통망 중심의 판로지원 사업

- 온오프라인 민간 유통채널이 자체 유통망에 판매할 **창업·벤처기업 제품**을 직접 심사·선정·판매(판매망 제공)
- * (현행) 기업들이 판로지원 사업 신청 → 공공기관이 심사 → 기업에 지원금 지급
- o 정부 **판로지원금**은 실제 판매금액에 비례하여 해당 유통채널에 직접 지급
- 공영홈쇼핑의 혁신제품 방송시간을 **20**%까지 확대(現 16.7%)하고, 비디오 커머스^{*} 마케팅 플랫폼 구축·운영
- * 혁신제품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상거래(전세계 시장규모 2.1조원)

□ 글로벌 수준의 유니콘기업 창출을 위한 집중지원 체계 마련

- TIPS를 통해 발굴된 혁신창업 기업(5년간 1,000개) 중 혁신성 · 성장성 높은 **20개 우수기업**을 매년 별도 선발 · 육성
 - 양산 등 대규모 자금 필요시점에 최대 **45억원**까지 집중지원 * 중진공에 민간투자연계 융자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신·기보 보증 연계
- **글로벌 벤처캐피털**을 통한 국내 창업기업의 **해외진출 지원**을 위해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**외자유치펀드**(現 1.4조원) 추가 조성
- 중소기업 중심의 **수출인큐베이터 지원사업***을 **창업기업 중심** 으로 일부를 개편하여 창업·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
- * 주요 교역거점에 설치(12개국 21개소)된 인큐베이터 시설을 통해 해외진출 희망 기업에 사무공간, 마케팅·법률 전문컨설팅 등을 지원(중진공 운영)
- 부처별로 분산된 창업·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기능을 지원 기관간 연계^{*}를 통해 일괄(one-roof) 서비스 제공
- * 창업진흥원(중기부, 기업선발) → KIC(과기정통부, 공간제공) → KVIC(중기부, 자금제공)
- 전세계 스타트업·투자자들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**창업** 박람회 및 **창업경진대회를 국제행사**로 확대
- ☞ (현장목소리) "현재 벤처정책은 국내 창업기업 위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벤처기업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을 극복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 지원이 절실합니다." (○○ 벤처기업 대표)

2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

◇ 재정·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 강화,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, 세제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벤처투자 붐 확산

① 혁신기업 지원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

※ 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펀드·대출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 마련·발표

□ 재정·정책금융을 마중물로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추가 조성

- 주요국 수준^{*}으로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**10조원** 규모의 **혁신모험편드** 조선
- * 혁신모험펀드 조성·투자시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0.13%('15년 기준)에서 '20~'22년 중 0.23%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('15년 기준 美 0.33%, 中 0.24%)
- 혁신모험펀드는 성장단계별 **투자대상**에 따라 **모태펀**드와 **성장사다리펀**드에 설치·운영
- 신규 출자에 필요한 **3조원 내외**의 재원은 ^①펀드 **회수재원** · ^②재정 · ^③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조달
- 혁신모험펀드는 보통주 투자비중 확대 등 **모험성**을 **강화**하고, 모태·성장사다리 등 공공펀드간 **운영·투자 연계 강화**

□ 혁신모험펀드와 연계된 20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 마련

- 신·기보 등 **정책금융기관**과 **민간자금**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**20조워** 규모의 자금공급 연계 추진
- * 신·기보 등의 보증 공급과 무보증 대출을 병행, 보증공급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은 재정에서 추가 출연 추진
- 혁신모험펀드 투자대상 기업 등에 **M&A·사업재편·외부기술** 도입(buy R&D)·설비투자 등 대규모자금 필요시점에 자금공급

□ 모태펀드의 국정과제 등 정책지원 기능 강화

-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지방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
 - 피투자기업의 고용성과에 비례한 성과보수 제도 도입 추진
 - 子펀드 **결성·투자·회수 단계별**로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유인장치를 마련
 - * (결성단계) 지역기업 투자비중을 높게 제안하는 운용사에 모태펀드 우선 출자 (투자단계) 펀드 조성액의 일정비중을 지역기업 투자 의무화 (회수단계) 지방투자 손실 발생시 모태펀드가 손실금 일부를 우선 충당
- 혁신기업, 대학·출연연, 특허관리전문회사 등의 신기술 분야 특허역량 강화를 위해 **지적재산권 사업화 전용펌드** 신설

② 일반국민·근로자의 벤처투자 환경 개선

□ 창업 초기기업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

○ 은퇴자·선배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엔젤 투자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상향 조정

현 행		개 선	
투자구간	투자구간 소득공제율 투자구간		소득공제율
1,500만원 이하	100%	3,000만원 이하	100%
1,500만원~5,000만원	50%	3,000만원~5,000만원	70%
5,000만원 초과	30%	5,000만원 초과	30%

-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**투자시 벤처기업**이 아니더라도 **3년 이내에 확인**될 경우 **소득공제 적용**
- * (현행) 투자시점에 기술개발 단계 등에 있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에서 제외
- 엔젤투자 **소득공제 대상을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** 등으로 **확대***('17년 세법개정안 반영)
- * (현행) 벤처기업, 창업 3년 이내 기보·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 → (개선)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(TCB) 우수기업,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 추가

□ 혁신적 아이디어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기회 확대

-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**업종** 제한・발행한도를 완화하고, 사후감독을 강화
- 금융·보험, 부동산, 도박업 등 **일부 업종 외**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**모두 허용**
- 발행기업의 **연간 자금조달 한도**(現 7억원)를 소액공모 한도 (現 10억원) 확대와 연계하여 **상향 검토**
- 크라우드펀딩 **투자한도 · 전매제한 · 광고** 등 분야의 **완화된 규제***를 현장에 적용(9.28일 자본시장법 개정)
- * (투자한도) 기업당 年 200→500만원, 총 年 500→1,000만원 (전매제한) 1년→6개월 / (광고) 인터넷포털 등 광고허용
- 창업 7년내 기술우수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금도 **엔젤** 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('17년 세법개정안 반영)

□ 우리사주·스톡옵션에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

- 창업자-근로자의 동업자적 성장 촉진을 위해 **우리사주** 등 **성과 공유 컨설팅**을 실시하고, **우리사주**에 대한 **세제지원 확대**^{*}
- * (현행) 400만원 소득공제 \rightarrow (확대) 창업·벤처기업에 한해 1,500만원 인정
- 핵심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성장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만에 재도입
-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
- (현장목소리) "2000년대 초반 벤처 붐 당시 스톡옵션 혜택은 우수인재 들을 벤처기업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매력적인 수단이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중견벤처도 인재채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." (OO 벤처기업 회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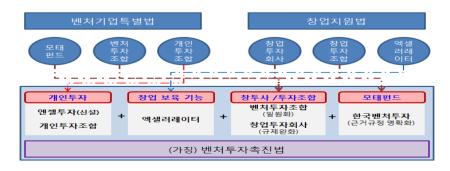
□ 일반인의 손쉬운 벤처투자를 위한 공모 창업투자조합 활성화

- **일반국민**들도 소액으로 손쉽게 **벤처투자**에 참여할 수 있도록 **공모 창업투자조합** 운영기반 정비
- * (현행)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은 50인 미만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방식으로만 결성 가능 → 일반국민들의 참여 제한적
-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시 조합결성·업무집행·해산 등 조합 운용에 관한 사항 및 관련법령에 따른 투자자보호 규정 마련
- 현행 창업투자조합에 적용되는 세제혜택*(양도소득세 비과세·출자금 소득공제)을 **공모 창업투자조합**에 동일하게 **적용**
- * (양도소득세 비과세) 창투조합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(출자금 소득공제) 개인이 창투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의 10% 소득공제

③ 벤처캐피탈 진입·투자를 위한 여건 조성

□ 벤처투자 관련 체계·제도 일원화를 위한「벤처투자촉진법」제정

- "同一행위・同一규제" 원칙 적용을 위해 벤처법・창업법에 분산된 투자관련 제도를「벤처투자촉진법」으로 통합
 - 유사한 성격의 **창업투자조합**(창업법)과 **벤처투자조합**(벤처법)을 벤처투자조합으로 **일워화**
 - 모태펀드가 출자하지 않은 **민간주도 투자조합**에 대해서는 **규제적용 최소화**
- 국내 벤처투자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의 주기적인 **통합적 통계생산** 의무화



□ 창업투자회사·조합의 자유로운 진입·투자를 위한 규제혁신

(★ 혁신창업 국가 실현을 위한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 중점 추진)

○ 신규사업자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창투사 **자본금 요건**을 하향 조정(10.17일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), **전문인력 자격요건** 완화

구 분	현 행	개 선
자본금 요건	50억원	20억원
전문인력 자격요건	국가 자격증, 학위 소지자	창업·투자 경험

- (현장목소리) "미국은 오래 투자했던 사람들도 있고 창업경험을 가진 투자자가 많은 반면, 한국은 박사 학위가 필요하다 등의 룰이 있어요. 그래서 경력만으로 한국에서 VC 만들기 힘들어요." (OO 액셀러레이터 상무)
-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이 자유롭게 자금운용·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·범위·방식에 대한 법령상 제한을 완화
 - (투자대상) 일률적 ·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창업기업 등 의무투자비중(40%)을 창업투자회사 규모별로 차등화
- (투자범위) 사회통념에 벗어난 일부 사행성 업종 등만 제외하고 **全 업종에 벤처투자 허용**(현재 숙박·음식점업, 부동산업 등 투자 제한)
- (해외투자) 창투사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해외투자 제한을 완화
- * (현행) 국내 창업기업 등에 자본금의 일정비율을 선투자한 후에만 해외투자 가능
- (투자방식) 다양하고 혁신적인 투자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式 투자방식(예시 : SAFE') 허용 검토
- *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권형태 투자방식
- 현재 개인투자조합 결성만 가능한 **창업기획자**(액셀러레이터)의 **베처투자조합**(창업투자조합 포함) **결성**^{*}을 **허용**
- * (현행) 창업투자회사, 신기술금융사, 유한책임회사(LLC)만 결성 가능

- 3 창업·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
- ◇ "투자→회수→재투자"를 위해 코스닥・M&A 시장 활성화,
 "창업→실패→재도전"을 위해 안전망 확충・재기지원 강화

① 코스닥 등 회수시장 경쟁력 제고

※ 12월중「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」별도 발표

□ 코스닥·코넥스·K-OTC 시장기능 회복·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

【 코스닥 】

- **코스닥위원회**의 **독립성**을 획기적으로 **강화**하여 유가증권시장 (KOSPI)과의 경쟁 촉진
- * (예시) 코스피·코스닥·파생 본부별로 별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, 성과급 지급률 상향 등을 통해 우수인력의 유입 촉진
-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 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**진입규제·관행 재정비***
- * (예시) 테슬라요건 적용실적이 있는 주관사에 대해 풋백옵션(공모에 참여한 일반 청약자에게 3개월간 공모가의 90% 보장)을 완화하는 방안 등
-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**지배구조**, **경영투명성**, 사회적 책임성 등에 대한 질적 상장심사 및 공시 확대
- * (예시) 과거 5년간 대규모 횡령·배임, 회계분식 등이 발생하였거나 소비자 피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상장 제한
- **중견 코스닥 상장기업**의 신성장동력 확보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**신성장 R&D 비용**에 대해 최대 40%까지 세액공제(現 최대 30%)

【 코넥스 】

○ 코넥스시장이 기업들의 성장자금 조달채널로 기능하기 위한 소액공모 한도 확대(10억원 →20억원) 등 제도 개선 추진

[K-OTC]

○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K-OTC에 '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'을 신설하고, 공시의무 등 규제를 대폭 완화

※ 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 활성화 방안

- o 사실상 모든 중소·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등의 요건 폐지, 펀드 지분증권까지 거래대상 확대
- ㅇ 협의거래, 경매 등 매매방식을 다양화
- ㅇ 거래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
- ㅇ 모태 성장사다리 펀드, 정책금융 등이 참여한 벤처투자 펀드 참여 유도

□ 연기금과 대형 IB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 유도

-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* 개선 등을 통해 '18년부터 단계적으로
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(예시: 10%) 확대 유도
- * 연기금의 투자수익률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, 현재 연기금의 벤치마크 지수는 "KOSPI 200" 중심으로 구성
- 연기금 투자풀의 코스닥주식 비중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평가^{*}시 '운용상품 집중도' 항목 평가배점(現 5점/총 100점) 확대 검토
- * 기금운용 성과 등을 종합평가 → 평가결과 우수시 경영평가 가점 등 부여
- **초대형 IB**에 대한 신규업무 인가 및 자본규제 정비 등을 통해 벤처투자 등 **기업금융 활성화**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

② M&A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

■ M&A를 저해하는 기술・인력탈취 제재 강화

- 기술탈취가 M&A보다 쉽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**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**의 대폭 확대 검토
- * (현행)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생산-판매 등 7개 유형만 징벌적 손배배상 적용 → (개선) 상생협력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30개 거래유형으로 확대 적용
- 대기업 등의 기술유용 행위 억제를 위해 집중 감시업종에 대한
 선제적 직권조사 강화

□ 대기업 등의 M&A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

- 대기업의 M&A 참여 활성화를 위해 피인수 벤처·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을 연장(3년→7년)
- 중견·대기업 등의 M&A 활성화를 위해 **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·합병**시 적용되는 **세액공제 요건 완화***(*17년 세법개정안 반영)
- * (현행) 인수・합병대가로 50% 초과분을 현금으로 지급 → (개선) 삭제
- 혁신형 M&A를 유도하기 위해 **동반성장지수 가점** 부여 검토

□ 해외자본의 국내 M&A 시장 참여 지원

- 중국 등 해외 VC와 국내 스타트업간 정례적 만남의 장 제공
- * 한 · 중 합작펀드 조성 등을 통해 중국 자본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
- 국내 스타트업 미디어, 액셀러레이터 등을 통해 **M&A 매물** 정보를 확보, 해외투자정보망(CrunchBase 등)에 적시 제공

③ 재도전·재창업 지원 안전망 강화

□ 연대보증제 폐지 확산으로 사업실패 부담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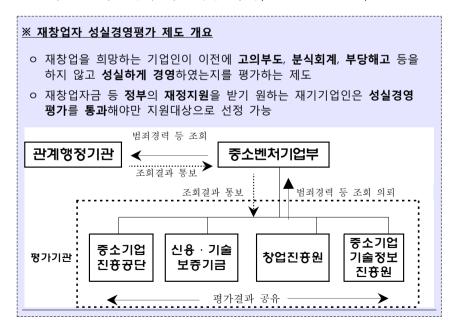
- **정책금융기관**이 창업 후 7년 초과기업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연대보증제를 **폐지**('18.上)하되, **도덕적해이 방지 보완책** 병행
- 책임경영지표^{*}를 도입하여 보증심사시 활용하고, 주기적 사후 관리를 통해 법인 대표자의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·유도
- * 법인과 대표자간 자산 등의 명확한 분리,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제3자 검증, 경영투명성 확보 여부 등
- 민간금융권 확산을 위해 연대보증이 면제된 **보증부대출**의 신용부분은 은행권도 연대보증을 폐지*토록 협약체결 추진
- * (예시) 신·기보가 제공한 80% 부분보증서 대출인 경우, 은행의 신용대출로 지원되는 잔여 20% 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

□ 사업실패시 재산압류·신용정보·조세채무 등 부담 완화

- 개인파산시 **압류재산 제외범위**를 최저생계 등 현실에 맞게 **상향조정***하여 사업실패에 따른 생활고를 완화
- * (현행) 개인파산시 주택보증금과 6개월간 생계비 900만원(월 150만원 × 6개월)을 제외한 모든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 → (개선) 1,080만원으로 상향(월 180만원)
- 재기사업자^{*}의 경우, 연체·체납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 회사간 공유 및 개인신용등급 반영을 제한하여 신용회복 지원
- * 신ㆍ기보, 중진공,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사업 대상자
- 폐업한 **영세 자영업자**가 **재창업・취업**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**소액체납 납부의무 면제**제도 한시시행("17년 세법개정안 반영)

□ 재도전·재창업 지원 강화

○ 재도전·재창업 지원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**성실경영 평가**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대상 확대(10.31일 규정 개정)



- 과거 법령을 위반한 기업인도 **법령위반 경중** 및 **경과기간**을 고려하여 정부의 **재창업 지원사업**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
- 성실경영평가에 탈락하였으나 **심사결과에 이의**가 있을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한 **재심의 절차** 보장
- 5개 평가기관* 중 하나에서 평가를 통과하면 최장 2년까지 효력을 인정하여 사업신청시마다 평가를 받던 불편함 해소
- * 중진공, 신보, 기보, 창업진흥원,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

구 분	현 행	개 선
경영 및 노동관련 법령위반 여부 확인기간	재창업 前 전체 기간	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경과시 평가에 미반영 * 벌금형·집행유예 : 5년 징역·금고 3년 미만 : 10년 징역·금고 3년 이상 : 15년
이의제기에 따른 처리방법	담당자가 판단	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정상참작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
정상참작 기준	평가기관별 상이	단일기준 마련 * ^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 여부, ^② 재범 여부, [®] 기타 부득이한 경우 등
평가결과 유효기간	기준 없음	최대 2년 (평가 후 다음연도 말일까지)

- **재기기업인 조세특례제도**(체납처분·징수유예)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**성실경영 평가통과자**를 추가('17년 세법개정안 반영)
 - 재기기업인 조세특례 **체납액 기준을 상향** 조정(3→5천만원)
- 모태펀드내 **재기지원펀드*** 조기 결성·집행, TIPS 방식의 민관 합동 **재도전 프로그램** 신설을 통해 재창업 지원기회 확대
- * (일정) 재기지원펀드 '17년말까지 결성완료, (대상) 폐업 사업주 등에 대해 60% 이상 투자
- 사업정리·채무조정·재창업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**재도전 종합지원센터***를 확대·설치하여 체계적 재도전 지원
- * (현행) 서울(2개)•부산•인천•대구•광주 등 9개 센터 운영중

Ⅳ. 추진계획

번호	정책과제	일정	부처
	①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		
1-1	사내벤처·분사창업기업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	′17.下	중기부
1-2	모기업의 사내벤처·분사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	′17.下	기재부 동반위
1-3	대학・출연研・공공기관 인센티브 체계의 창업친화적 개편	′18.上	교육부 과기부 기재부
1-4	다양한 창업유형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	′18.上	중기부
1-5	벤처기업 확인제도 전면 개편	′18.上	중기부
1-6	TIPS 방식의 정책지원 프로그램 확대	′18.上	중기부
1-7	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혁신기업 여신공급 확대	′18.上	중기부 금융위
1-8	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확대	′18.下	중기부
1-9	초기 창업기업·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	′17.下	기재부 행안부
1-10	메이커 스페이스 조성	′18.上	중기부
1-11	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재설계	′17.下	중기부
1-12	판교창조경제밸리(명칭 공모증)를 혁신모델로 선도개발	′17.下	국토부 기재부
1-13	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·활용을 통한 창업기반 확충	′17.下	기재부
1-14	혁신도시 공공기관내 창업공간 제공 및 입주기업 지원	′18.上	기재부
1-15	창업도약패키지 사업 2배 확대	′18.下	중기부
1-16	혁신형 조달제도 도입	′17.下	기재부 조달청
1-17	창업기업 판로확보 지원	′18.下	중기부
1-18	유니콘기업 창출을 위한 집중지원 체계 마련	′18.上	중기부

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

②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

2-1	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신설	′17.下	중기부 금융위
2-2	혁신모험펀드 연계형 대출프로그램 마련	′17.下	중기부 금융위
2-3	모태펀드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	′18.上	중기부
2-4	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	′17.下	기재부
2-5	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및 세제혜택 부여	′17.下	금융위 기재부
2-6	우리사주·스톡옵션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	′17.下	기재부
2-7	공모 창업투자조합 운영기반 정비	′18.下	중기부
2-8	벤처투자촉진법 제정	′18.上	중기부
2-9	창업투자회사 규제 혁신	′18.上	중기부

③ 창업·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

3-1	코스닥·코넥스·KOTC 제도 정비 및 세제지원	′17.下	금융위
3-2	연기금·대형IB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 유도	′17.下	금융위
3-3	기술·인력탈취 제재 강화	′18.上	중기부 공정위
3-4	대기업의 M&A참여 인센티브 확대	′17.下	중기부 기재부 동반위
3-5	연대보증제 폐지 확산	′17.下~	금융위 중기부
3-6	사업실패시 재산압류・신용정보・조세채무 등 부담 완화	′17.下~ ′18.下	법무부 금융위 기재부
3-7	성실실패자 기준 완화 및 조세특례 확대	′17.下	중기부
3-8	TIPS방식의 재도전 프로그램 신설 등	′17.下	중기부